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1호 2023. 1. 2(월)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선 람 | 기관의 장 |
| | |

조 례

- 남원시 조례 제1857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 1

훈 령

- 남원시 훈령 제438호 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 4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1월 2일

남원시 조례 제 1857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167명”을 “1,17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137명”을 “1,14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0명”을 “34명”을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

(단위: 명)

| 구 분 | 총 계 | 본 청 | 의 회 | 직속기관 | 사업소 | 읍면동 |
|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
| 총 계 | 1,174 | - | | | | |
| 정무직 계 | 1 | | | | | |
| 시 장 | 1 | 1 | | | | |
| 일반직 계 | 1,123 | - | | | | |
| 4급 | 6 | 4 | 1 | 1 | | |
| 5급 | 57 | 26 | 2 | 3 | 3 | 23 |
| 6급 이하 계 | 1,060 | - | | | | |
| 별정직 계 | 2 | - | | | | |
| 6급 상당 | 1 | - | | | | |
| 7급 이하 | 1 | - | | | | |
| 연구직 계 | 4 | - | | | | |
| 연구사 | 4 | - | | | | |
| 지도직 계 | 44 | - | | | | |
| 지도관 | 3 | | | 3 | | |
| 지도사 | 41 | - | | | | |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총정원: <u>1,167명</u></p> <p>2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137명</u></p> <p>3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0명</u></p> | 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: <u>1,174명</u></p> <p>2. -----: <u>1,140명</u></p> <p>3. -----: <u>34명</u></p> |

「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1월 2일

남원시 훈령 제 438 호

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시장”을 “취임 100일 이내에 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고려하여”를 “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5개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”를 “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4조(공약사항 확정) ①·② (생략) ③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, 관리 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<u>시장</u>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.</p> | <p>제4조(공약사항 확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임 100일 이내에 시장</u>-----.</p> |
| <p>제5조(실행계획 수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재정상황, 모든 여건 등을 <u>고려하여</u>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공약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. ②·③ (생략)</p> | <p>제5조(실행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고려하여 시장 취임 후 5개월 이내에</u>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6조(실행계획 변경)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공약총괄부서의 장과 <u>협의를 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6조(실행계획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약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